

# 2026년도 네이처 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 공모과제 시행계획 추가공고

경상북도 네이처 생명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(재)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2026년도 네이처 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 공모과제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 하오니, 지역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4월 7일  
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

## 1 공고 개요

### □ 사업목적

- 경북 네이처 생명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원천기술 및 천연물 기반의 신소재 개발,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네이처 생명 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

### □ 공고규모 : 경상북도 출연금+시·군 대응자금 범위 내

- 과제별 연구개발비 45,000천원 내외
- **도비와 시·군비 공동 지원 필수**  
**(해당 기업의 기초지자체(시·군) 현금 지급 약속서 필수 제출)**
- 개별 사업의 지원금액 및 지원사업수는 예산 상황,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  - \* 과제 선정은 발표평가(100%)를 기준으로 선정함
  - \* 공고에 명시된 연구비·연구기간 등의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.

### □ 접수 기간 : '26. 4. 7.(화) ~ 4. 17.(금), 오후 4시까지

## 2

## 지원 대상 과제 RFP

□ 선정과제 : 포항시 1, 안동시 1, 영천시 1, 상주시 1

(단위 : 년)

No	RFP 명	지원 과제수	사업 기간
1	햄프 및 천연물 기반 고기능성 제품·농업 소재 개발	0	협약~ 26.11.3 0
2	지역특화작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및 소재 개발	0	
3	첨단소재 및 AI 기술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	0	

1) 최종 지원사업 수는 예산 상황,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2) 사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적정 사업비 및 사업 목표를 수정 제안할 수 있음

## 3

## 신청 자격 및 제한

□ 연구기관 신청자격

○ 주관기관(기업) 참여기관(연구기관 또는 대학) 공동참여 권장

○ 주관기업

- 경상북도에 사업장(사업자등록증이 경상북도 소재)을 두고 있는 기업

- 사업공고 당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상된 기업에 한함

○ 참여기관: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- 국·공립연구기관
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

- 「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- 경북 네이처 생명산업 협의회 기관
- 상기 목록 외 신청 자격이 해당되는 기관은 참여 가능

#### □ 연구책임자 신청자격

- 주관·참여기관 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기업 및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.
  - \*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, 임기만료,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.
- 단,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
- 연구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.

## 4 신청방법 및 절차

- 접수 기간 : '26. 4. 7.(화) ~ 4. 17.(금), **오후 4시까지**
- 신청 방법: 주관연구책임자가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대로 작성하여 제출 마감일까지 (재)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
  - 이메일 주소 : khcho68@gib.re.kr
  - 연락처 : 054-850-6915
- 신청마감일 오후 4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

□ 제출서류 <서식 준수, 필수>

- ① 연구개발계획서: 붙임3 서식(별첨된 서류 포함)
- ② 해당 지자체(시·군) 현금 지급 약속서
  - ※ 포항시, 안동시, 영천시, 상주시 소재 기업은 약속서 제출 필요 없음
- ③ 사업자등록증: 국세청(홈텍스) 또는 관할세무서
- ④ 표준재무제표증명(최근 2개년도): 국세청(홈텍스) 또는 회계사무소 발행
- ⑤ 최근년도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.  
 ※ 제출서류의 누락,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.

□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연구과제는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협약시점부터 당해 연도 11월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 배정
  - \* '26년 연구기간 및 연구비 배정은 7개월(5월 ~ 11월)로 산정
- 개발된 기술의 기술(이전)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매출계획, 고용창출, 시제품 제작, 논문, 지적재산권, 기술이전 등을 연구 성과 목표로 제시
- 기술개발 정량적 목표 구체적으로 제시(평가지표, 현재 기술수준, 개발 목표치, 목표 산출근거 등 표로 제시)

□ 주관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연구개발기관 유형	연구개발비 비율	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
	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
비영리기관	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% 이하	-	-
중소기업	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75%이하	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	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중견기업	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70%이하	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30% 이상	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% 이상
공기업·대기업	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50%이하	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50% 이상	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% 이상

\* 총 연구개발비 =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+ 기업부담금  
 \* 상세한 기준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시행령 제19조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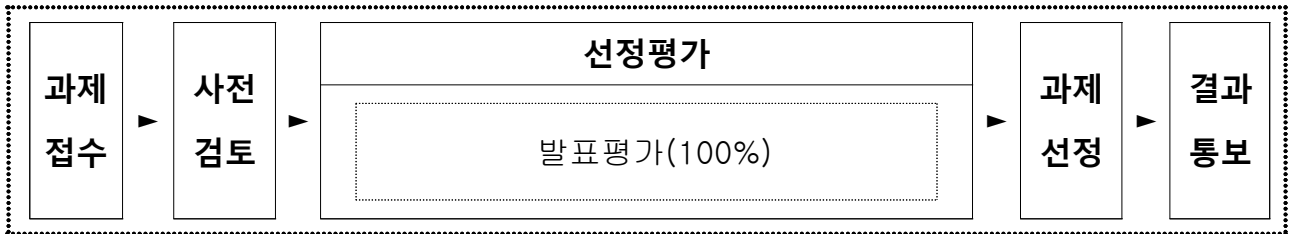
## 5

## 선정기준 및 절차

### □ 선정기준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) 및 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
- 「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」 제22조(선정평가) 및 제26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)

### □ 선정절차



※ 평가 일정의 세부내용은 추후에 공지 예정임.

\* 예산 상황,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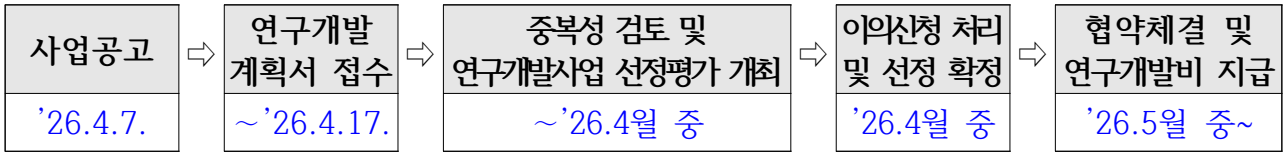
\* 선정된 연구팀은 연구 수행 전에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하여야 함.

### □ 주요 평가지표

구분	주요 평가 내용
공모 과제	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,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전략의 충실성, 기술개발 지원의 파급효과(목표성과 및 사업화 성과창출,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 기여도),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절성

## 6

## 추진 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## 7

## 유의사항

- 해당 사업은 경상북도와 기초지자체(시·군)가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소속 기초지자체(시·군)의 사업 참여 협약이 필수적임.
- 사업선정평가위원회 검토 결과 연구개발비 및 사업목표 일부를 조정
- 시설·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.
- 참여기관은 업무 내용 및 연구개발비 비중을 50% 미만으로 제시
-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, 신청서류 구비여부,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허위로 기재한 경우,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안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, 본 공고문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.
-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사업계획서 분량: 표지, 요약문. 목차를 제외하고 50페이지 내외

※ 사전제외대상: 아래 사항에 **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**하시어 신청 바랍니다

- ① **부도업체 /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**  
※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
- ② **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**  
※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
- ③ **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**  
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함
- ④ **최근 연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**  
※ 단,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,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, 시설투자(산업기술 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·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,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)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·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,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)  
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, 상환전환우선주(RCPS)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- ⑤ **최근 연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자본전액잠식**
- ⑥ **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**
- ⑦ **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**
- ⑧ **신청과제의 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**
- ⑨ **사업참여자가 협약 월기준으로 정부 및 기관 등의 과제수행인건비계상률이 총 100%를 초과하는 경우**
- ⑩ **동일한 신청과제(사업내용)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, 또는 과제의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**
- ⑪ **신청서, 사업계획서,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**  
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

## 8 문의처 및 기타

□ 공고(신청자격, 관련규정, 절차 등) 관련: 험프사업화팀(054-850-6915)